

#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60
----------	------

제출년월일 : 2017.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한지역’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한구역’ 용어로 변경(안 제2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 제3조(제한지역외 지역) 삭제(안 제3조). 상위법에 근거없음
- 상위법률 조항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

## 개정 조 례 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8. 9. ~ 8. 30.(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 붙임 4
- 방침결정문 : 붙임 5

< 붙임 1 >

##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가축사육 제한지역)”을“(가축사육의 제한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강 상 봉
	담당·팀장 직위·성명	수질보전계장 박 옥 란
	담당자 성명·전화	신 우 현 (행정 2244)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동 별
전부 제한구역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일부 제한구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u>전부제한지역</u>과 <u>일부제한지역</u>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p> <p>② <u>전부제한지역</u>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p> <p>③ <u>일부제한지역</u>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1. ~ 4. (생략)</p> <p>5. <u>일부제한지역</u>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p> <p>-----</p> <p>-----</p> <p>-----<u>전부제한구역</u>과 <u>일부제한구역</u>-----.</p> <p>② <u>전부제한구역</u> -----</p> <p>-----.</p> <p>③ <u>일부제한구역</u>-----</p> <p>-----.</p> <p>④ (현행과 같음)</p> <p>1.~ 4. (현행과 같음)</p> <p>5. <u>일부제한구역</u>-----</p> <p>-----</p> <p>-----</p> <p>⑤ <u>안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u>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p> <p style="margin-left: 2em;">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p> <p style="margin-left: 2em;">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제 &gt;</p>			
<p>제3조(제한지역외 지역) (생략)</p>	<p>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p> <p>-----</p> <p>-----<u>법 제8조제4항</u>-----</p> <p>-----.</p>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동 별
전부 제한 지역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북내동, 원서동, 초지동, 성곡동
일부 제한 지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동 별
전부 제한 구역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북내동, 원서동, 초지동, 성곡동
일부 제한 구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